

하도급 현금결제시 세제 및 공공공사 입찰 우대 혜택

정부, 어음제도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업체는 정부입찰심사에서 우대받을 뿐만 아니라 법인·소득세도 최고 10%까지 공제받는 한편 하도급법상 과징금 제재가 완화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현금결제가 많은 업체들은 가급적이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제외해 주고 현금지급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지급이자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나 부도금액을 결제할때까지 신용불량자로 관리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신용도 이상의 어음발행에 제동을 거는 등 어음부도에 대한 금융제재도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2월 17일 이현재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 연쇄부도 유발, 하청·납품업체의 금융부담 가중 등 폐해가 큰 현행의 어음지급 관행을 없애고 현금지급 풍

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구매자금융제도 및 구매 전용카드제도 도입에 따른 사용 촉진대책 등의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경부, 공정위, 금감위, 중소기업청, 한국은행등 관계기관들은 3월 말까지 어음제도 개선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 뒤 관련법령 개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정부는 일거에 어음거래를 축소, 폐지하려는 제도개편은 그 유용성보다 오히려 경제적 혼란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인식에 의해 어음거래가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면서 어음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아래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어음결제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구매자금융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구매카드 등 대체결제수단의 활용을 촉진하

Q&A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압류 및 전부명령 중 우선 순위

Q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의 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2건)하고 발주자에 통보하였으나, 수급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제3의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2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우선인지 아니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우선인지

A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와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

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대금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우선인지 또는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을 받은 경우가 우선인지에 대하여는 동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 내용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발생사유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는 한편 어음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어음발행 정보관리를 강화하고 하도급거래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새로 도입될 구매자금융제도는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발행한 환어음을 납품기업에 즉시 결제하는 것이고, 지난해부터 일부 시행되고 있는 구매전용카드제도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납품기업은 은행,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이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구매자금융제도

한은의 자금지원 대상을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할인에서 구매자금 대출로 확대, 단계적인 전환을 거쳐 향후 어음결제를 축소해 나가는 취지의 제도로서 구매기업이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대금을 현금결제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결제수단의 구매자금융제도이다.

1) 거래은행이 구매대금 지급 지원

납품기업은 납품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 거래기업에 추심의뢰(환어음은 추심수단으로만 활용케 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쇄부도 방지)하고 구매기업은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대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지원받아 구매대금을 지급(구매기업의 거래은행이 환어음 결제를 즉시 이행토록 함으로써 대금지급 지연 소지를 방지)

하게 한다.

2) 법인세·소득세 10% 감면

한국은행은 은행의 구매기업(30대 계열 제외)에 대한 구매자금용 취급실적을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구매자금용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한다. 「공제세액=(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구매전용카드 결제액-어음발행액)×0.5%」가 되며 공제한도는 산출세액의 10%가 된다.

3)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반영

구매기업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구매자금용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제외하며 구매자금용제도를 통한 대금결제실적을 세무조사대상선정기준에 반영하여 구매자금용제도 이용도가 높은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정부입찰심사시 우대

구매자금을 대출받는 구매기업(30대 계열 제외)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우선하여 보증 지원하고 정부입찰심사시 구매자금용제도를 통한 대금결제실적이 높은 기업을 우대(적격심사시 구매자금용 이용도가 높은 기업에 가점 부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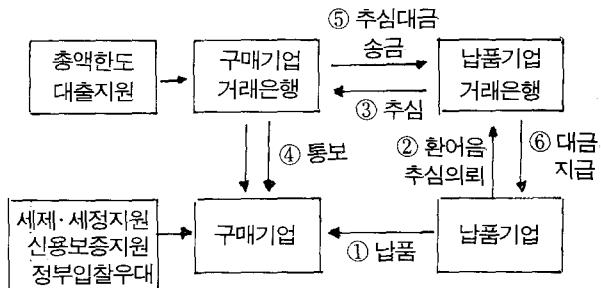
□ 구매전용카드 사용 활성화

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구매기업이 지급대행은행(카드사)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이다.

1) 법인세·소득세 공제

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구매자금용제도를 통한 결제 때와 똑같이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해 준다. 또한 구매자금용제도를 통해 결제하는 기업과 똑같이 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해 세정상 우대 한다.

구매자금용 취급 및 지원방안



2) 신용도에 따라 대금결제 할부방식 가능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금결제방식을 개선하여 일시납 및 일부납(Revolving)방식 이외에 신용도에 따라 할부방식이 가능하도록 결제방식을 다양화 한다.

□ 어음부도에 대한 신용정보관리 강화

어음부도에 대한 금융제제를 강화한다.

현재는 부도시부터 10년 경과시 부도금 결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불량자(적색거래처) 등록을 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도금액을 결제할 때까지 계속 신용불량자로 관리하고 신용불량자 해제후 기록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기존 부도업체에 대해선 예외로 한다.

□ 어음발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모니터링 강화

기업의 어음발행 정보를 축적·집중해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Monitoring)체제를 구축한다.

1) 개별기업 어음교환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금융결제원(어음교환소)에 개별기업 어음교환 정보를 누적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 은행은 기업별 어음교환 정보를 참고하여 해당기업에 대한 당좌개설, 어음장 교부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한다.

어음제도 개선방안 추진사항

추진사항	조치사항	추진기관
◇ 구매자금융제도 도입·운용		
○ 총액한도대출 지원	금통위규정 개정	한국은행
○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재경부
○ 세무조사 대상선정시 우대조치	세무조사대상선정기준 개정	국세청
○ 신용보증 지원	-	신용보증기관
○ 정부입찰시 우대조치	입찰자격심사기준 개정	재경부, 조달청
○ 구매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자체규정 제정	은행연합회, 은행
◇ 기업구매카드 활용촉진		
○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재경부
○ 세무조사 대상선정시 우대조치	세무조사대상선정기준 개정	국세청
○ 대금결제방식 개선	금감원규정 개정	금감위(금감원)
◇ 어음부도에 대한 신용정보 관리강화	금융기관 공동규약 개정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 어음발행 모니터링 강화		
○ 개별기업별 어음교환정보 D/B구축	어음교환소규약 개정	금융결제원, 은행
○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어음발행정보 분석·관리	당좌거래계약관 개정	은행
○ 당좌개설심사 강화	공동가이드라인 제정	은행연합회, 은행

2) 당좌개설 심사 강화

거래은행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음발행 상황을 중점 관리한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요주의」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기적(예 : 요주의 1개월, 고정이하 1주)으로 어음발행 상황을 거래은행에 통보하도록 한다.

거래은행은 해당기업의 어음발행상황을 분석, 이상징후 발견시 어음장 교부 축소·중지 등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한다. 원천적으로 신용이 취약하거나 부실한 기업의 어음남발을 방지, 연쇄부도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은행의 당좌개설 심사를 강화한다.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당좌개설 심사를 위한 공동 가이드 라인을 마련, 시행한다.

□ 하도급거래관행 개선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현금 지급 의무화」「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만기일

을 초과하는 어음교부 금지」 등 지난해 4월부터 새로 도입된 하도급 결제방식을 조기 정착시켜 하도급거래의 현금결제를 확대한다.

1) 현금결제시 정부입찰심사에 활용

공정위, 중기청의 직권실태 조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행 여부 점검 결과를 정부입찰심사에 활용하여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대한다.

2) 하도급법상 과징금 제재 완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때도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기업을 우대한다. 하도급대금의 현금(구매자금융 및 구매전용카드를 통한 결제실적 포함)결제 비중이 일정비율(예 : 6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선 하도급법상 과징금 제재를 완화한다.